

2019년도 제1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3. 11.(월요일)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강상욱, 백대용, 손승우(분과위원장)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0건(안건번호 제2019-1421호~1446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하되, 프레임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 1개 안건(제2019-1422호),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 2개 안건(제2019-1423호~제2019-1424호)은 심의일 현재 게시물이 삭제되어 있고 보호원이 조사한 자료만으로는 저작권침해 여부가 불명확하여 부결하기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관련 '●●●●', '□□□'(온라인서비스명), '닉네임:△△'(이용자), 'Winx'(단축링크서비스명) 공개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온라인서비스명, 이용자는 익명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단축링크서비스명은 현재 서비스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A 위원 : 이견 없음
- 성원영 전문위원 :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회의록의 공개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보여주면서)회의록

공개 기준에 대해 설명함

- B 위원 : 청구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해당 정보 제공 청구 건의 문제에 관한 논의 부분은 공개함이 타당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일정 게시를 보여주면서) 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내 심의일정 공개 시 권리주장자(청구인)의 대리인 명칭은 공개하고 있음
정보제공 청구 심의 회의록에서 청구인의 대리인 관련 내용을 그대로 공개할 경우 청구인의 대리인이 바로 특정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홈페이지 내 심의일정을 공개할 때 법원의 재판에 규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을 준용하여 정보 제공 청구 대리인인 변호사의 성명과 해당 법률사무소의 명칭은 공개하였음
- A 위원 : 지난 회의록 내용을 보면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일부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B 위원 : 청구인의 대리인이 특정될 경우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임
- 정현순 전문위원 :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는 시정권고 심의와 다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제공청구 명령의 전 단계 절차임 이는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 분쟁으로 인한 분쟁 해결 절차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회의록 공개에 있어서 공익적 요소가 적기 때문에 공개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심의 관련 회의록은 비공개 처리하며, 지난 회의 시 논의되었던 특정 법률사무소에서 대리하는 정보 제공 청구의 여러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기 바람

3. 안전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제2019-1421호~1446호로 모두 30건임

안전번호 제2019-1421호는 일반인의 신고 민원에 따라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일본드라마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보호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여주면서)게시물은 보호원의 조사 당시에는 공개되어 있었으나, 검토보고서 작성 시점에는 비공개 처리되어 있었음

(해당 url 주소를 주소창에 입력하여 게시물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면서)그런데 심의 시점 현재 게시물이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C 위원 :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시정권고의 제도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가지가 있음
 기본적으로 온라인상에 불법복제물이 게시가 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을 하고, 게시자에게 경고를 하고 있음
 다만 해당 게시물이 심의시점 이미 삭제가 되면 더 이상 삭제 중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게시자에게 경고만 하고 있음

- C 위원 : 심의시점 현재 게시물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422호~1424호는 일반인 신고 민원에 따라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면서)게시물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임
 안전번호 제2019-1422호는 중국 소설 '○○○○'를 원작으로 하는 '오디오드라마'를 프레임링크 방식으로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19-1423호는 미국, 러시아에 서버를 둔 사이트 내 '○○○○' 애니메이션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설정한 게시물로 보이나, 심의대상 게시물의 링크로 연결되는 해외 사이트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안전번호 제2019-1424호는 '○○○○' 소설 텍스트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중국 사이트 내 게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임

위 게시물 내 링크로 연결되는 중국 사이트 게시물은 현재 전송 중이나, 해당 저작물에 관한 중국 내 권리관계를 확인 하는데 한계가 있어 중국 사이트 게시물의 불법복제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보호원이 조사하여 제출한 자료화 게시물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면서)요컨대 안건번호 제2019-1423호~1424호 게시물은 현재 삭제되어 심의 시점 기준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을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 평가하기 어려움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제2019-1422호~1424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중국소설 '○○○○'에 관해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는 중국 보이즈러브(BL) 소설로, 아직 국내 정식발행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B 위원 : 일반인 신고당시 증거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인은 증거자료 없이 신고하였음
신고내용을 토대로 보호원 직원이 조사하여 심의에 상정하게 되었음
링크로 연결되는 해외사이트의 게시물의 경우 심의시점을 기준으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가 유효하여 불법복제물을 실제로 제공받을 수 있으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라고 볼 수 있음
그런데 본 건에서 문제되는 영상물에는 "Vietsub"라고 적혀 있고 베트남어로 보이는 자막이 붙어있어 보호원이 해당 사이트의 권리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안건번호 제2019-1425호~1446호 게시물은 모두 원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웹하드 사이트 등을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안건번호 제2019-1421호는 일본드라마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게시물로 검토보고서 작성 당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으나, 심의일 현재 공개처리 되어 있으므로 가결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안건번호 제2019-1422호~1424호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로 심의 시점 현재 삭제처리 되어 있고, 게시물로 연결되는 해외 사이트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우므로 만장일치로 부결함

안건번호 제2019-1425호~1446호는 모두 웹하드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불법복제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421호, 제2019-1425호~1446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되, 프레임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 제2019-1422호,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 제2019-1423호~1424호에 대하여는 연결된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심의일 현재 게시물이 삭제되어 있어 부결하기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이 제1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3. 18.

분과위원장 손승우

위원 강상욱

위원 백대용